

부속서 13A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 1 절  
기업인 방문자

1. 각 당사국은 기업인 방문자가 다음을 제시한 경우 고용 인가를 취득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일시입국을 허용한다. 다만, 그 기업인 방문자는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기준의 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일방 당사국의 국적·영구거주권 또는 시민권의 증명
  - 나. 기업인이 당해 활동에 종사할 것임을 입증하고 입국목적을 기술하는 서류, 그리고
  - 다. 계획된 기업 활동의 범위가 국제적이고, 그 기업인이 현지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
2. 각 당사국은 기업인이 다음을 입증함으로써 제1항다호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다.
  - 가. 계획된 기업 활동에 대한 보상의 주된 원천이 일시입국을 허용하는 당사국의 영역 밖에 있다는 것. 그리고
  - 나. 기업인의 주된 영업장소 및 실제이윤 발생 장소가 적어도 현저하게 그 영역 밖에 있다는 것
3. 어느 당사국도,
  - 가.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절차, 청원, 노동인증심사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하거나,
  - 나.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과 관련한 수량 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 절  
무역업자 및 투자자

1. 각 당사국은 감독 또는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필수적인 기술을 수반하는 자격으로 다음의 기업인에게 일시입국을 허용하고 확인서류를 제공한다.

- 가. 주로 동 기업인이 공민으로 되어있는 당사국의 영역과 입국하고자 하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 간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실질적 무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인, 또는
  - 나. 그 기업인 또는 그 기업인의 기업이 상당량의 자본을 투입하였거나 투입하는 과정에 있는 투자를 설립·개발·관리하거나 그 운용에 대한 자문 또는 핵심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 다만, 그 기업인은 일시입국에 적용 가능한 기존의 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 2. 어느 당사국도,

- 가.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의 조건으로 노동시장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하거나,
- 나.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과 관련하여 수량 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3 절 기업내 전근자

1. 각 당사국은 감독 또는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전문지식을 수반하는 자격으로,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에서 기업내 전근자와 관련하여 정의된 대로 지사·자회사 또는 제휴회사를 통하여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 설립된 일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투자자 또는 기업에 고용된 기업인에게 일시입국을 허용하고 확인서류를 발급한다. 다만, 그 기업인은 일시입국에 적용 가능한 기존의 입국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그 기업인이 입국신청일 직전 1년 이상 그 기업에 고용되어 있었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2. 어느 당사국도,

- 가.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의 조건으로 노동시장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하거나,
- 나.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과 관련한 수량 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부록 13A.1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1. 부속서 13A의 제1절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기업인 방문자에게 90일까지 체류기간이 허용된다.

2. 부속서 13A의 제2절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투자자 및 무역업자에게 2년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된다. 그 체류기간은 그 근거가 되는 조건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총 8년까지의 연속되는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8년을 초과한 추가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

3. 부속서 13A의 제3절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기업내 전근자에게 2년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된다. 그 체류기간은 그 근거가 되는 조건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최장 총 8년까지의 연속되는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8년을 초과한 추가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

4. 부속서 13A에 규정된 범주 중의 하나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싱가포르의 기업인은 상호주의의 기초 위에서 허가된 체류기간 동안 재입국허가 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할 수 있다.

5.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싱가포르의 기업인은 권한있는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싱가포르에 대하여는,

1. 단기 기업인 방문자가 도착한 때 90일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된다.

2. 무역업자 및 투자자에 대한 입국은 최장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이며, 체류기간은 그 근거가 되는 조건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총 8년까지의 연속되는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8년을 초과한 추가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

3. 기업내 전근자의 입국은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이며, 체류기간은 그 근거가 되는 조건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총 8년까지의 연속되는 기간 동안 연장

될 수 있다. 8년을 초과한 추가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

4. 부속서 13A에 규정된 범주 중의 하나에 따라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대한민국의 기업인은 상호주의의 기초 위에서 허가된 체류 기간 동안 재입국허가 없이 자유롭게 싱가포르에 입국하거나 출국할 수 있다.